의안번호	2211313
의 뢰 인	민홍철의원
회 답 일	2025.7.9.
추계번호	25B3620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 (주민지원사업 등)	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1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. 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(신설)	재량규정

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16조(주민지원사업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의 내용, 지원규모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정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다만,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동법 제16조제2항[1)]에 따라 시행 중인 개발제

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은 2025년 기준 729억원 수준으로, [참고자료]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

[표 1]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주요내용	2025
생활기반사업	도로, 상하수도, 하천 및 교량 사업 등 생활편익사업, LPG탱크 보급, 주택개량 등	42,617
환경문화사업	여가녹지 및 누리길 조성 등	30,261
합계		72,878

자료: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❑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Ⅳ. 부대의견

❑ 해당사항 없음

1) 제16조(주민지원사업 등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기준·금액 등은 제30조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,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,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요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❑ (사업내용)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사업(생활편익사업, 복지증진사업, 소득증대사업) 및 저소득 원주민의 생활비용보조 사업 등

○ (근거) 2000. 1. 28. 제정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같은 해 7. 1.부터 시행

○ (재원)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건축물,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자에게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재원

- * ('20년) 881억원 → ('21년) 951억원 → ('22년) 922억원 → ('23년) 880억원 → ('24년) 911억원

❑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: 728억 7,800만원

○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 : 42,617백만원

- 도로, 상하수도, 하천 및 교량 사업 등 생활편익사업, LPG탱크보급, 주택개량 등 추진
- 생활비용보조 400백만원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학자금, 전기료, 건강보험료,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대별로 60~100만원 한도로 지급
- (차등지급안) 기준소득 대비 90~100% 60만원, 80~90% 70만원, 70~80% 80만원,60~70% 90만원, 60% 이하 100만원

○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등 : 30,261백만원

- 환경문화사업 공모 선정사업에 25,261백만원을 반영하여 여가녹지, 누리길 등 조성
- 주민지원사업 중 환경문화사업 등 비중은 생활SOC 확충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
- 환경문화사업 등 비중(정부안 기준) :
  '21년 338억(36%) → '22년 334(39%)→ '23년 332억원(40%) → (목표) 40%

○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중 주민이용도 등 효과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생

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5개소 5,000백만원 반영

<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사례>

생활편익사업(도로개설)	생활편익사업(소하천정비)
복지증진사업(마을회관 건립)	소득증대사업(체험마을 조성)
누리길 조성사업	여가녹지 조성사업

❑ (추진체계)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 시행

○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*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

- * 40%초과 : 70%, 30%초과~40%이하 : 80%, 30%이하 : 국비90%

○ 관리보조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, 주민수, 구역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분

- * 관리보조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활동에 필요한 출장비, 단속장비 구입, 경계표석 설치 등에 사용

❑ (지원대상) 생활편익·복지증진·소득증대 및 환경·문화사업 등은 간접지원 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('09년 도입)은 현금지원

<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>

구 분		사 업 내 용
생활기반	생활편익	도로, 주차장, 공원, 상・하수도, 소하천, 오수처리시설 등
	복지증진	마을회관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, 유치원, 경로당, 노인복지관 등
	소득증대	공동작업장, 공동창고, 주말농장,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등
	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	보건(세탁, 목욕, 이・미용), 의료(진료, 당뇨검사, 마음건강), 금융(채무상담), 문화(예술, 공연) 등 서비스
	기타	노후주택 개량, LPG 소형탱크 설치, 생활비용 보조, 연구・조사
환경문화(공모)		누리길, 여가녹지, 경관(전통문화) 등
생활공원(공모)		GB내 미집행공원 등의 녹색여가 공간 조성(장기미집행 대책)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❑ 추진절차

○ ❶ 시·군·구는 매년 초 다음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제출(생활기반사업, 환경문화사업, 생활공원사업)

○ ❷ 시·도는 시·군·구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3.31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

○ ❸ 국토교통부는 시·도별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소요액을 근거로

다음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편성 확보

○ ❹ 지방비 확보 및 실집행률 제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지원사업 선정(매년 9월중)

- 환경·문화사업(생활공원 포함)은 외부 전문가의 사업계획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선정

<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>

전년1-2월	평가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 제출 요구	국토부→시·도→시·군·구
전년3월	사업계획서 수립·제출	시·군·구→시·도→국토부
전년6~8월	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	국토부
전년9월	국고보조금 교부계획(안) 통보	국토부→시·도→시·군·구
전년12월	주민지원 예산 확정	국회
1월	주민지원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	국토부→시·도→시·군·구
2월	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	시·군·구→시·도→국토부
3월	국고보조금 교부	국토부→시·도→시·군·구
익년3월	사업비 정산	시·군·구→시·도→국토부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